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분담금의 세부 산정 방법(제36조제3항 관련)

1. 분담금 산정식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분담금} = (\text{제3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총액} - \text{제39조에 따른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times (\text{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 \times 2.5 + \text{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times 1) / 3.5$$

2. 가중요소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실적을 가중요소로 적용한다.

3. 피해규모 반영기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 및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통하여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에 반영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이란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한다.

나.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한다.

4. 세부 산정기준

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을 산정할 때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또는 2017년 8월 9일부터 2026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을 산정할 때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가목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다.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2)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라.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